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7월 2일 강태원 의원 외 6인(강태원, 연만흠, 박재국, 이필용, 김환동, 조영재, 이종호 의원)이 제안하여 7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가. 자치입법 과정의 단계별 심사기준을 구체적·실질적으로 규정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입법을 사전예방하고

나. 입법예고, 공포 등 개별 자치법규로 나누어져 있던 입법체계 관련규정을 통·폐합하여 입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충청북도조례안사전예고제시행지침(훈령 제01162호)
-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조례 제02564호)

## 3. 주요내용

가. 입법예고(안 제4조~안 제10조)

- (1) 예고문 작성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안 제5조)과 관련기관 또는 부서의 협의(안 제10조) 신설.

(2) 입법과정의 민주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청회 제도 도입(안 제9조).

※ 현행 「충청북도조례안사전예고제시행지침(훈령 제01162호)」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 조례에 통합하였음.

나. 입법안 작성 및 심사(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1) 자치법규 체계·형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별표)」 마련.

다.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안 제13조~안 제19조)

(1) 도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도민의 권익보호(안 제18조).

(2)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전 관계공무원 교육,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9조)

※ 현행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조례 제02564호)」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 조례에 통합.

라. 자치법규의 정비(안 제20조 및 안 제21조)

(1) 자치법규 제정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치법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치법규에 반영조치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2)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를 정기적으로 정비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 4.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도 정책수행의 기본이 되는 법제업무 관련규정이 조례·훈령 등의 각종 형태로 산재되어 있고, 통일적인 법규정이 결여되어 있어 행정의 비능률은 물론 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제업무 관련규정을 보완·종합하여 단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법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책수행의 효율화와 도민의 권익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내용에는 이견이 없음.

붙임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